

# [검토보고서]

2015. 10. 20(화) 제 2 6 2 회 임 시 회

# 양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



# 양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

### 1. 제안경과

○ 제안자 : 양주시장(농촌관광과)

○ 제출일 : 2015년 10월 7일

○ 검토일 : 2015년 10월 8일

#### 2. 제안이유

- 최근 유용곤충이 식용이나 사료용 뿐만 아니라 미래의 식생활, 식량 안보 및 생태계 유지 등의 무한한 신 성장산업으로 부각되어 지고 식약용, 사료용, 애완용, 학습용 등으로 향후 곤충시장 확대가 예상됨.
- 유용곤충을 활용한 농가소득 향상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양주시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 3. 주요내용

- 시장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·시행 하여야 함(안 제2조)
-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방향과 목표, 곤충의 생산·가 공·유통 등에 대한 기반구축, 전문인력의 양성 등 곤충산업 특성화 계획 수립(안 제3조)
- 곤충 산업의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생태연구소, 박물관, 생태원,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 추진과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 을 위한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지 원, 곤충생산·가공단지, 체험학습장 등 조성, 사업추진 규정(안 제4조)
-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과 수출판 로 촉진 및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 추진 규정(안 제5조부터 제7조)
-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단체 육성 규정 (안 제9조)

### 4. 검토의견

#### 가. 법령검토

- 본 조례는 「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곤충산업을 양주시 농가의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제정하는 자치조례이며
- 제정(안)에서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특성화 계획수립, 기반조성, 수출 및 상품화 기술개발, 단체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있어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

#### 나. 정책검토

- 양주시에서는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곤충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강소농 육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양주시에서는 "곤충산업의 비전과 전략"을 수립·제시하였으며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"곤충전문가 양성과 네트워킹", "현대화된 곤충 사육 인프라 조성", "상품특화와 차별화 홍보마케팅"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였음.

# 다. 내용검토

- 시장은 곤충산업 특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곤충산업기반 구축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- 농가가 기반시설을 조성하거나 수출, 상품화등과 관련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
-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곤충산업과 관련한 자문을 받거나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과 연구 등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

○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곤충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음.

#### 라. 재정검토

-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조례(안)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며
- 조례(안) 제3조에 따라 곤충산업 특성화계획 수립시 양주시의 예산 여건을 감안한 투자계획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임.

#### 마. 형식검토

○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.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 체계를 갖추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음.

# 바. 절차검토

○ 입법예고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음.

# 5. 참고자료

참고1. 관계법령 발췌문

-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)
-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5조)

# 참고 1

# 관계법령 발췌문

### 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】

####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#### 제7조(전문인력의 양성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,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·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 제8조(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
- 1.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
- 2.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
- 3.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
- 4.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
- 5.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# 제9조(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수 있다.

### 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】

#### 제5조(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)

-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,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강사료와 수당
- 2.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
- 3.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
-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
- 2.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
- 3.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

- 4.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
- ⑤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.
- 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
- 3.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
- 4.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